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1권
2009년 2월 pp. 51~78

논문접수일 2009.01.28
논문심사일 2009.02.10
심사완료일 2009.02.23

ISP98의 특성과 UCP600과의 비교연구

박 세 운*

Ⅰ. 서 론
Ⅱ. 보증신용장의 현황과 ISP98의 특성
Ⅲ. ISP98과 UCP600의 비교
Ⅳ. ISP98 적용시 유의점
Ⅴ. 결 론

Ⅰ. 서 론

1998년 미국의 국제은행법률실무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가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이라는 보증신용장에 대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여, 국제상업회의소가 ICC Publication No. 590으로 발행하였다.[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assw@changwon.ac.kr)

1)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스탠드바이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는 2008년 대한상의 발간 공식번역 및 해설서의 명칭을 따라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자로 발효되었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보증신용장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축적된 30년의 경험과 판례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보증신용장이 은행의 독립보증(independent bank guarantee)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2]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일규칙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보증신용장은 청구보증서와 달리 신용장이어서 이에 대한 별도의 통일규칙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이용 당사자는 신용장통일규칙(UCP)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보증신용장에 적절하지 않는 조항이 많고 규정하지 않은 부분도 많으므로 보증신용장에 대한 별도의 통일규칙이 필요하다.[3]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매우 복잡하고 상세하며 방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간략하게 기술된 신용장통일규칙 및 청구보증통일규칙과 비교된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어떤 조항은 지나치게 은행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개설의뢰인과 수익자는 그것을 채택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보증신용장에 신용장통일규칙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유용한 조항이 많고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다양하여, ① 약관(혹은 보통거래약관)[4]으로 보는 견해, ② 성문화된 상관습(혹은 국제상관습)으로 보는 견해, ③ 상관습법(혹은 국제상관습법)으로 보는 견해,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00년 7월에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을 승인(endorse)하였다.,[5] 물론 그러한 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거래관행을 반영하는 국제규칙으로서 사실상의 힘을 얻고

---

2) URDG는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와 국제상관행위원회의 10년간(1981년-1991년)의 작업을 거쳐 제정되어 국제상업회의소 이사회에서 1991년 12월 20일 채택되었다. 현재 1차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George Affaki, A User's Handbook to the URDG, 2001)

3) Affaki는 장기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청구보증통일규칙은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eorge, Affaki, On revising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Documentary Credit Insight ,13-1. 2007)

4) 약관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특히 거래협회 등의 단체)가 작성할 수 있다.

5) William Stibravy , UNCITRAL "endorses" Incoterms 2000 and ISP98, Documentary Credit Insight 6-3, 2000, p.10.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6]

보증신용장의 준거규칙으로는 국내법률, 신용장통일규칙,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청구보증통일규칙 등이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개설하는 보증신용장에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 은행이 개설하는 보증신용장에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통일규칙이 금액기준으로 각각 50% 정도 적용되고 있다.[7] 미국에서 보증신용장의 대부분에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역사가 짧아 10년에 불과한 반면에 신용장통일규칙은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와 주보험당국(state department of insurance)의 규정이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규정이어서 보험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에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신용장이 금액면에서 미국에서 개설되는 보증신용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계약이나 지방채권을 발행할 때 지방정부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의뢰하는 보증신용장에도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되었지만 개정의 필요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10년의 기간 동안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채택이 확대되고, 자동연장조항(automatic extension clause)[8], 항구적 약정(perpetual undertaking)[9], 금액 변동(fluctuating amounts)에 대한 판례법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 보증신용장의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국제은행법률실무협회는 표준양식(model form)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표준양식은 2009년 초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10]

---

6) 나아가 이로써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는 견해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 Carter H. Klein ,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and Practices Misunderstood or Little Understood by Application and Beneficiaries, 2008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2008, 184.

8) 관련 미국 판례 : ① Western Surety Co. v. North Valley Bank 사건 (2005 Ohio 3453(Ct. App.)(USA)
② Greenwich Stationery Co. v. First Fidelity Bank D.N.CV95 0147594 S.D.N. CV95 0146207 S. 1996 Conn. Super. LEXIS 1291 (Conn. Super. Ct.1996)(U.S.A).

9) 관련미국 판례 : Golden West Ref. Co. v. Suntrust Bank 61 UCC Ref. Serv. 2d 1011(C.O. Cal. May 22,2006)(U.S.A)

우리나라에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영훈(2000), 서백현(2001),이상훈(2003) 및 박석재(2000,2002,2003)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선행연구는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이 제정되기 전의 연구이어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주로 문헌연구로서 보증신용장의 연혁과 이용현황,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특성,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차이를 조문별로 살펴보고, 보증신용장에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할 조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보증신용장의 현황과 ISP98의 특성

1. 보증신용장의 개념

보증신용장은 개설은행이 기초계약상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보증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청구를 하면 개설은행은 일정한 금액을 기초계약(underlying contract)과는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확약이다.

보증신용장이 은행의 독립보증과 법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보증신용장은 독립보증(또는 청구보증, 요구불보증)과 명칭이 다르고[11] 이용범위가 넓을 뿐, 기초계약상 채무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실무에서도 보증신용장은 독립보증과 차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보증서는 표제에 'Standby L/C'와 'Guarantee'를 병기하기도 한다.

보증신용장은 상업신용장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의무를 은행의 의무로 대체

---

10)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The ISP98 Model Forms Project, 2008 Guarantee & Standby Forum, 2008, p. 92.

11) Roy Goods,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1992, p.16

한다. 주된 차이점은 상업신용장은 기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청구를 하지만, 보증신용장에서는 기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default situation) 지급청구를 하며, 만약 기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다는 것이다. 즉 상업신용장은 매매계약 또는 서비스계약에서 1차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보증신용장은 1차적인 채무[12]가 불이행될 때, 2차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직불보증신용장(direct pay standby L/C)은 양자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개설의뢰인의 금융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보증신용장에 해당되고, 아울러 직불보증신용장의 경우에 개설은행은 기초계약상의 금전채무의 지급기일이 되기만 하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하므로 대금지급의 1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업신용장과 같기 때문이다.

보증신용장은 2차적인 지급수단이라는 점에서 'standby'라는 이름이 붙여졌다.[13] 흔히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보증신용장의 다양한 용도는 실무의 필요에 따라 실무자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고, 지급수단으로서의 보증신용장의 다기능성은 실무에서 입증되어 왔다. 보증신용장은 계약의 이행보증이나 선수금환급보증의 용도로 사용되는 외에도, 기업어음과 내국어음의 상환을 보증하거나, 월세, 별거수당(alimony), 보너스의 지급을 보증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더욱이 직불보증신용장에서 원금과 이자의 정기적인 지급을 위하여도 사용될 수도 있다.

---

12) 여기서 1차적이라 함은 개설은행의 지급의무가 2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3) 여기의 2차적이라는 것은 기초계약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초계약상의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용장대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에서 2차적이라 할 수 있지만, 보증신용장에서 수익자에 대한 개설인의 의무는 1차적인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2. 보증신용장의 연혁과 이용현황

수익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현대적 신용장은 나폴레옹 시대 이후 북대서양무역에서 클린신용장(clean letter of credit)[14]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20세기 초까지 사용된 초기의 신용장은 대부분 클린신용장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많은 점에서 클린신용장은 보증신용장의 선조가 된다.

2차 세계대전 후 매매거래와 관계가 없거나 구매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매매거래에서 미지급이 된 경우 서류를 제시하여야 대금이 지급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되었다. 이 약정이 더 일반화됨에 따라 "standby"라는 이름이 통용되었고, 미지급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지급하는 확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그 후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5편이 제정됨에 따라 UCC의 계몽적 역할에 힘입어 미국에서 보증신용장의 무한한 사용가능성이 나타났다.

보증신용장의 탄생은 신용장처럼 확실성을 부여하지만 일반적인 지급방법보다는 보충적인 보증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데서 비롯한다. 보증신용장은 특히 미국에서 유럽의 독립보증의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은행으로서는 미국 연방법(Title 12. U.S.C(seventh))[15]상 보증발행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16] 보증을 발행할 수 있는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미국은행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자 그에 대한 일종의 편법적인 수단으로 신용장의 형식을 빌린 보증신용장이 출현하였다. 보증신용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일부 있었으나 그 사용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 신용장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는 상업신용장과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증신용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누구도 보증신용장의 기원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시장의 필요성에서 나왔고, 시장조성자의 독창력에서 나왔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독창력은

---

14) 신용장에서 환어음만 요구하는 신용장을 클린 신용장이라고 한다.

15) 미국연방법은, Title 1. General Provisions ~ Title 50. War and National Defense; and Appendix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Title 12. Banks and Banking'은 은행의 업무 및 규율에 관한 것으로 '연방은행법'이라고 통한다. Title 12.는 Chapter 1.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Chapter 50. Check Trunc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Ralph H. Folsom,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West Group ,2002, p.314.

발명의 아버지이다. 오늘날 실무자는 시장조성자로 Len Back(Citibank), Charlie McGee(Manufactures Hanover), Art Bardenhagen (Irving Trust), Jim Harrington(Bankers Trust)을 거명하고 있다. 필요와 독창력의 결혼에 대하여 Henry Harfield (Sherman and Sterling)은 보증신용장을 혼전의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보증신용장을 문제아, 의부자식, 사생아라고 부르기도 하였다.[17]

보증신용장은 1962년의 악명 높은 Bay of Pigs 침범에서 인질을 석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신용장은 1970년대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보증신용장 사용 잔액이 10배나 증가되었다.

이러한 성장기간 동안에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보증신용장의 악용가능성을 인식하였다. 1973년 미국 National Bank of San Diego의 도산은 부분적으로 무분별한 보증신용장의 발행에 기인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은행은 신용분석의 목적으로 보증신용장을 대출과 같이 취급하도록 요구받았다. Peter Lloyd-Davies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적합도와 대출검사 목적으로 보증신용장을 대출금으로 간주하도록 지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미국 의회는 어떤 한 은행의 보증신용장 잔액 총액에 대하여 한도를 설정하였고 보증신용장에 대하여 지급준비금 적립을 요구하였다.

보증신용장 발행 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글로벌베이스로 보증신용장과 다른 기타 부외항목을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1988. 7. 11.에 은행규제와 감독관행에 관한 바젤위원회에서 보증신용장 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미국 은행은 1996.2.9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Interpretive Ruling 7.1016이 개정됨으로써 보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과거의 관행에 따라 여전히 보증신용장을 주로 발행하고 있다.[18] 사실상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증신용장 시장이 만들어지고 성장한 것은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보증

---

17) Vincent M. Maulella, The History of Standby Credit, 1996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1996, pp. 81-87.

18) 그러나 아직도 많은 미국의 은행가, 법률전문가는 미국 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Glenn Ransier, The US marketplace and the URDG,, Documentary Credit Insight 14-4,2008, pp.10-11.)

서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19]

최근에는 WTO의 설립, FTA의 활성화 등으로 상품이동 및 관세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 국제거래가 급증하여 은행의 보증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무역거래에 따른 보증으로는 1980년대까지는 상업신용장이 많이 발행되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보증신용장과 청구보증(요구불보증)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급증세는 21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Documentary Credit World』가 미국 상위 300대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증신용장 발행 잔액은 1997년 6월말 1,097억 달러였던 것이 2007년 12월말에는 4,527억 달러로 1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7년 12월말 보증신용장 발행 잔액을 보면 금융보증이 3,928억 달러로 이행보증 599억 달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상업신용장 발행 잔액은 1997년 6월말 339억 달러에서 2007년 12월말에는 481억 달러로 약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설은행의 상업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계정과목이 동일하여 보증신용장 발행실적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다.[2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보증신용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1982년의 1건의 고등법원 판례와 최근의 2건의 대법원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21] 이것은 최근에 보증신용장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은 주로 구상보증신용장[22]을 개설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의 보증신용장 수익자가 공사 발주자 또는 수입상으로서 우리나라 개설의뢰인에 비하여 우위에 있고,

---

19) Vincent M. Maulella, Can US banks issue guarantee?, Documentary Credit Insight 8-2,, 2002, pp. 15-17.

20)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해서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 상업신용장이든 보증신용장이든 구분하지 않고 "외화미확정지급보증(신용장개설관계)"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신용장 방식이 아닌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은 "외화미확정지급보증(기타)로 회계처리한다. (한국금융감독원, 은행회계해설, 2008.12., pp. 525-526.

21) 보증신용장 관련 최근의 대법원 판례로는 다음의 두 건이 있다.
①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 12251 판결
② 대법원 2004.9.24 선고 2001다 69771 판결

22) 구상보증신용장(counter standby credit)에서 우리나라 개설은행은 외국의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면, 외국의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은 자기 나라의 수익자(공사 발주자 또는 수입상) 앞으로 보증신용장을 개설한다.

자기 나라 은행이 개설한 보증신용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미국 상위 300대 상업은행의 신용장 발행 잔액 (단위: 억달러)

	보증신용장	상업신용장
1997년 6월말	1,097	339
2007년 12월말	4,527	481

(자료: Documentary Credit World)

3. ISP98의 주요 특성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과 발행 주체의 상이

신용장통일규칙과 청구보증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저작권을 가지고 발행하였음에 반하여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미국 국제은행법률실무협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상업회의소가 승인[23]하고 발행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두 단체간의 약정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24]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공식의견을 낼 수 없다는 점이다[25].

---

23) 1998년 4월 2일 국제상업회의소 이사회에서 승인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1998년 4월 6일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 46명의 참석자 중 32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하였다. (Winfried Holzwarth and Dan Tayler, Were the new ISP Rules on standbys fairly adopted and will they be useful? Winfried Holzwarth and Dan Tayler, debate, Documentary Credit Insight 4-4, 1998. p.14.

24) Brooke Wunnicke, Diane B. Wunnicke and Paul S. Turner, Standby and Commercial Letter of Credit, Aspen Law & Business, 2007, p.6-3.

25)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의 EDI메시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언급이 된 적은 한 번 있다.(ICC Official Opinion R.439 (2000/01))
www.dcprofessional.com에서 보증신용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이다.

(2) 규정 방식의 상세함과 다양한 당사자를 위한 규정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청구보증통일규칙과는 달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39개 조항, 청구보증통일규칙은 6절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제10절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극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신용장통일규칙이 은행과 상인을 위한 규정임에 반하여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은행원과 상인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기관, 기업재무관리자, 정부관리, 규제당국 그리고 변호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증신용장통일규칙 편집자 개관(editor's overview)에서 언급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비법률가가 규칙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상업회의소의 방침 때문에 가능한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은행원이나 무역업자가 이용하기에는 난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26]

특히 Holzwarth와 Tayler(1998)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법률가의 과자가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신용장통일규칙은 "널리 사용되는 관행(prevailing customs and usage)"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표준계약조건(standard contract terms)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일부 관할권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은 계약을 해석할 때 적용되지만 표준계약조건은 의문이 제기될 때 그것을 계약 관계에 도입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고 지적하였다.[27]

그러나 Affaki(1999)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지나치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세계적인 관행에 부적절하게 법률적 형태이고, 전통적인 국제상업회의소 통일규칙의 규정 스타일을 따르지 않았지만 보증신용장이 대립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자주 소송과 파산과 관련이 되어 있어,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보증신용장 문장은 상업신용장보다 더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28] 특히 보증신용장이 이행보증이 아닌 금융보증의 목적으로

---

26) 박석재, 국제 신용장 거래에 관한 ISP98, 상사법연구 제19권 2호, 2000, p.709.

27) Winfried Holzwarth and Dan Tayler, op.cit.

28) George Affaki, How do the ISP standby rules fit in with other rules? George Affaki

사용될 때에는 매우 상세하게 작성되고 있다.

(3)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의 역할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통일규칙의 보완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없는 규정이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많다. 예컨대 개설인이나 확인인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의 상호에 대한 규정(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4.14조)과 법의 작용에 의한 지급청구권 양도(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6.11조)는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전혀 없는 규정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상업신용장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 공식의견으로 승인된 것이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본문(예컨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4) 공식 해설서 발간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청구보증통일규칙과는 달리 공식해설서(Official Commentary)를 발간하였다.[29] 신용장통일규칙 6차 개정 후 해설서(Commentary)가 발간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에는 "공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즉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해설서는 신용장통일규칙을 해설하는 지침으로 만들어 졌으나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해설서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나 "공식"이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해설서에 권위를 추가하였다.

(5) 지나치게 개설은행에 유리하게 된 일부 규정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개설은행이 큰 위험 부담 없이 신용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개설은행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어서 개설은행에 유리한 규정이 많다. 그러나 특히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개설은행에 유리한 규정이 많아서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특

---

reports, Documentary Credit Insight 5-1. 1999, p.3.

29) 공식해설서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워킹그룹의 위원장인 James E. Byrnes가 저술하였다.

정 조항의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한다(상세한 것은 ISP98 적용상의 시사점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Ⅲ. ISP98과 UCP600의 비교

보증신용장에 적용 가능한 통일규칙으로 청구보증통일규칙,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있다. 이들 통일규칙은 보증신용장과 청구보증의 독립성과 서류거래성을 대원칙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세부규정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통일규칙의 차이점 중 중요한 것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은행의 다른 지점의 신용장에서의 지위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30]에서는 다른 국가에 있는 은행 지점만 신용장거래에서 다른 은행으로 간주하지만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2.02조에서는 동일 국가에 있는 다른 지점도 다른 은행으로 간주한다.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이것은 많은 점에서 타당하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요구된 A은행 종로지점 대신에 A은행 창원지점에 서류가 제시되면 이것은 개설은행을 구속하지 않는다. A은행 창원지점은 종로지점이 개설한 보증신용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동일 은행의 지점은 동일한 법적 실체이므로 어떤 지점은 다른 지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2.02조가 이 조항을 시작하면서 "이 조항의 목적상(For the purposes of these rules)"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유이다.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지점의 법률적 지위(legal status)가 아닌 보증신용장에서의 지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0)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2. 발행자 자격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은행 이외의 법인 또는 자연인도 보증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31]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개설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개설자(issuer)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신용장을 은행이 아닌 비은행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은행만이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국제상업회의소의 공식의견(R.505)[32]에 따라 수익자가 인정하면 기업발행 신용장도 신용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33]

3. 유효하지 않는 신용장(Inoperative L/C)

신용장통일규칙은 유효하지 않은 신용장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이러한 용어 사용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2.03조는 유효하지 않는 신용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보증신용장의 "not issued"라는 문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증신용장은 물리적으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발송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표현이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되어 무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보증신용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he standby L/C calls for an amendment that expressly states that the standby L/C has been turned into an enforceable one, and drawing is allowed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ment."

---

31)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1.09조 c항 및 제1.11조 c항

32) 2002년 10월 국제상업회의소는 공식의견 R.505를 승인하였으며, 이것은 국제상업회의소 웹사이트(www.iccwbo.org)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유효하다.

33) Gary Collyer, Commentary on UCP 600, ICC, 2007. pp.17-21.

4. 연장 또는 지급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연장 또는 지급"(extend or pay)이라는 개념이 없다. 신용장에 따른 제시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지급청구이다. 그러나 보증신용장 통일규칙 제3.09조에서는 "연장 또는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수익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용한 메커니즘이고(즉 만료일이 경과한 후 지급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의 의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금지급 대신에 기간연장을 요청하도록 하면 수익자가 만기일 경과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지급청구를 먼저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조항은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에게 만기일 연장을 협상하기 위한 시간을 준다.

실제로 가끔은 보증신용장 그 자체가 수익자에게 "pay or extend"청구를 허용하기도 한다.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지급청구를 할 만큼 개설의뢰인의 의무불이행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것은 악의적인 것이다.

5. 할부지급청구

신용장통일규칙 제32조에서는 할부사용(instalment drawing)에서 해당 할부부분을 할부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할부분뿐만 아니라 차후의 할부분까지도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통일규칙 규정이 보증신용장에 적용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1983년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시에 이 규칙은 할부선적뿐만 아니라 할부사용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그것은 신용장통일규칙하에서의 보증신용장의 할부지급청구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나 이것이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 상업신용장에서는 수출상이 어떤 할부선적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당 할부선적분뿐만 아니라 차후의 할부선적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상품선적거래와 달리 보증신용장에서는 개설의뢰인이 의무이행을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할부지급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차후에도 개설의뢰인이 의무이행을 하여 할부지급청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이 없다.

요컨대, 보증신용장은 대개 개설의뢰인의 일련의 의무이행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을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에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은 배제시켜야 한다.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3.07조에서는 각 서류의 제시는 독립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적용배제가 불필요하다.

6. 정상 휴업일이 아닌 사유로 영업 중단 되었을 때 유효기일 연장 여부

신용장통일규칙 제36조에서는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 영업이 패쇄됨으로써 수익자가 유효기일 이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일이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3.14조에서는 이유에 관계없이 영업재개 후 30일까지 유효기일이 자동 연장된다. 그리고 영업중단이 사전에 예상되면 서류 제시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

7. 서류심사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d항은 제시된 각 서류에 담긴 자료가 (i) 그 서류 내의 다른 자료, (ii) 다른 필요서류 내의 자료 및 (iii) 신용장조건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류 상호간의 일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4.03조에서는 서류가 보증신용장조건과 상충되지 않을 것을 요구할 뿐, 다른 서류와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보증신용장이 거래금액의 일부만을 커버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초계약금액 1,000,000달러의 10%를 커버하기 위하여 100,000달러의 이행보증신용장이 발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행보증신용장에서는 거래금액이 1,000,000달러임을 표시하는 송장 사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급청구금액은 100,000달러이고, 송장금액은 1,000,000달러이므로 지급청구서 내의 자료가 송장 내의 자료와 상충될 수 있다.

8. 서류의 언어

상업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의 대부분은 관련 자료를 포함한 표준화된 포맷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보증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는 제시된 모든 서류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서류가 보증신용장에서 사용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류심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4.04조에서는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는 보증신용장에서 사용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서류의 언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제23조에서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의 언어는 신용장 언어일 것이 기대된다고 규정한다. 만약 서류심사자가 그들의 내부관행에 따라 번역(예컨대 서류는 서류심사자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작성되었으나 보증신용장 언어가 다른 언어일 때)한 경우 서류심사자가 번역에 근거하여 서류를 심사한 결과 하자가 있어 대금지급을 거절하면 번역의 정확성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이외의 제3자 발행서류는 신용장에 다른 명시가 없다면 신용장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3자가 발행하는 서류의 언어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제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제3자 발행서류의 발행자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공식서류는 그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번역한 서류는 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익자 이외의 제3자 발행서류에 대하여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고,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국제표준은행관행 제23조를 유추해석하면 제3자 발행서류에 신용장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9. 동일한 문구와 인용부호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서류의 일치성에 대하여 매우 개괄적으로 규정하며, 이는 국제표준은행관행 제25조에 의해서 단어와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타는 하자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보완되고 있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

4.09조에서는 오타(typographical error)에 대하여 국제표준은행관행 제25조와 같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고 있다.

신용장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 유효한 하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에 불과한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은 보증신용장의 일부로 지급청구서의 견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 수익자로서는 그러한 견본에 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시하면 된다. 이것은 지급청구서류의 일치성을 높여서 개설은행이 신속하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4.09조 c항에서는 "정확한" 또는 "동일한"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보증신용장의 오타까지도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에 그대로 반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없다.

10. 비서류적 조건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h항에서는 해당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면 비서류적 조건으로 본다.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4.11조에서는 약간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두 가지 요건, 즉, (i)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고, (ii)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개설은행이 직접 결정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서류적 조건으로 본다. 이 중에서 후자의 요건은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의 두 사례에서, 첫째, 보증신용장조건 중의 하나로 "This standby will only be honoured if the applicant default."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조건은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통일규칙 모두에서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보증신용장조건 중의 하나로 "This standby will only be honoured if the beneficiary issues a performance bond of US$200,000 in favour of the applicant and such performance bond is advised through us."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할 때, 이 조건은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해 조건의 충족여부를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으로부터 또는 개설인의 통상적 업무 내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본다.

비서류적 조건으로 간주되어 무시되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조건의 일치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대안은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에서 특정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비서류적 조건(예컨대 "This standby L/C will only be enforceable after the applicant has approved the sample provided by the beneficiary)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h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h항을 적용 배제하는 대신에 개설의뢰인이 발행한 승낙확인서(approval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것이다.

11. 공문서 또는 재판서류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however named"라는 문구를 규정하여 제시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목이 아니거나 제목이 없더라도 요구서류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면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4.19조에서 공문서나 재판서류의 경우에는 보증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제목이나 제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류 제목을 서류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류는 서류 발행지 현지 언어가 사용되어 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신용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으면 문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34]

12. 결제거절통지기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35]과 달리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5.01조 a항은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에 대하여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34) James E. Byrne,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1998, p. 192.

35)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는 "합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최장 5영업일로 결제거절통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지 않고 "불합리하지 않은"(not unreasona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합리적인지 여부는 각 사안별로 판단된다. 개설은행에 부여된 시간의 합리성 여부는 각 사례의 다양한 요인과 사실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5.01조는 3영업일 이내의 지급거절 통지는 불합리하지 않다고 규정함으로써 안전항구(safe harbour)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개설은행이 제시서류를 접수한 날에 서류심사를 마쳤더라도 3영업일에 결제거절통지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어 제5.01조 제a항 제i호에서는 7영업일 후의 통지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4영업일과 7영업일간의 지급거절통지가 비합리적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결제거절통지가 비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아니라 개설은행이 부담한다. 모든 결제거절통지는 7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이 서류를 심사하는데 장기간이 필요하면 신용장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이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he notice of dishonour will only be given (X number) of business days after it receives the documents."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와 마찬가지로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5.01조 제b항 제i호는 결제거절통지를 가능한 한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지만, 동조 동항 제ii호에 따라 그러한 통지가 '허용된 통지기간 내'에 제시인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개설은행이 원격통신 대신에 특송배달이나 우편으로 결제거절통지를 발송하였더라도, (제시인이 개설은행과 같은 도시 내에 있거나 인근건물에 소재하는 경우와 같이) 그 통지가 서류제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시인에게 도달하였다면 결제거절통지는 비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류심사기간의 기산일도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다르다. 예컨대 토요일 업무종료 후 서류가 은행에 접수된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토요일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월요일을 서류심사기간의 초일로 산입하나(R. 265),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9.03조에서는 다음 최초의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월요일을 서류접수일로 하고, 그 심사기간은 "다음 최초의 영업일"에 해당하는 화요일부터 기산한다.

13. 서류의 처분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5.02조는 결제거절통지를 할 때에 결제거절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결제거절통지를 할 때 서류의 처분상황에 대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c항과는 달리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5.07조에서는 서류 처분상황을 명시하지 않아도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보증신용장에 따라 제시되는 서류는 거의 가치가 없는 지급청구서이고 수익자가 필요할 때 쉽게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시은행이 작성한 대부분의 표지서류에는 지급거절이 되었을 때 서류 처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4. 개설의뢰인의 불일치통지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이 하자 있는 서류에 대하여 잘못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는 이는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홍콩에서는 개설의뢰인이 계약위반일자(보증신용장에 대한 지급청구에 대한 개설은행의 잘못된 지급)로부터 6년 이내에 개설은행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36]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5.09조에서는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서류에 하자가 있으므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시에(timely)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 명확한 제한시간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5.01조로부터 유추하여 개설의뢰인은 7영업일 이내에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개설의뢰인이 7영업일 이내에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에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보증신용장에 보증신

36) King Tak Fung, UCP 600 Legal Analysis and Case Studies, P.E.E.R. Consultancy Ltd. 2008, p.159.

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할 때의 함정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5. 신용장 양도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신용장통일규칙 제38조에서는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 앞으로 양도하는 것만 허용되고 제2수익자가 다시 제3수익자 앞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6.02조에서는 양도횟수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에서 분할청구/선적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분할양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일부양도가 금지된다.

둘째, 법의 작용에 의한 양도에 관하여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상속인, 유산관리인, 청산인, 신탁관리인, 재산관리인, 승계회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익자의 권리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수익자의 적법한 양수수익자처럼 자신의 명의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법의 작용에 의한 양도에 관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6.11조). 이러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은 신용장통일규칙에도 적용될 수 있다.

VI. ISP98 적용시 유의점

보증신용장에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적용할 때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설의뢰인이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할 조항

개설의뢰인의 견지에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다음 조항은 대금상환계약에

서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개설신청서에서도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4.13조 제a항과 제8.01조 제b항 제ii호

이 조항이 적용되면 첫째, 개설의뢰인은 다른 자의 사기, 위조,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수익자의 서류 제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37] 둘째, 개설의뢰인은 제시인이 실제 수익자가 아니거나, 개설은행이 서류 제시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 관행 또는 다른 관행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이 없이 개설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5.09조

이 조항에서는 개설은행이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지급청구에 응하였더라도 개설의뢰인이 서류접수 후 즉시(공식해설서에서는 7영업일 이내) 서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개설은행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4.11조

개설은행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신용장에 비서류적 조건이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적용배제를 고려하여야 할 조항

다음 조항은 수익자가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4.09조 제c항

이 조항에서는 인용부호, 괄호 또는 첨부 양식을 사용하여 특정문구를 요구

---

37)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1.05조에서는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사기적 청구 문제를 규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준거법에 따를 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다.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7권, 무역상무학회, 2002, pp.26-27.

하고 특정문구가 "정확하거나" 또는 "동일해야"한다고 규정한다면, 정보를 위한 여백선과 여백뿐만 아니라 철자, 구두점, 띄어쓰기 등의 타이핑 오류도 포함하여 제시된 서류상의 문구가 똑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2)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제5.06조 제c항 제i호

지정은행으로부터 결제거절통지가 접수된 후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제시서류가 개설은행에 인도되거나 개설은행으로부터 결제거절통지가 접수된 후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하자용인을 받도록 요청하였다면 수익자는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V. 결 론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보증신용장에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상업신용장의 사용은 정체 상태에 있는 반면에 보증신용장의 사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법률적인 스타일로 너무 상세하고 규정되어 있어서 업계와 은행 실무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은 상업신용장에 주로 적용되지 위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보증신용장에는 적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항이 규정되지 않은 것도 많다. 특히 금융보증신용장에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이 부적합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을 잘 이해하여 보증신용장에 신용장통일규칙이 아닌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일부 조항은 수익자 또는 개설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있으므로 적용시에 특정 조항의 배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보증신용장은 상업신용장에 비하여 요구하는 서류가 아주 간단하여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이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개설은행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익자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익자가 신용도가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설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상업신용장에서는 선하증권과 같은 제3자가 발행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보증신용장에서는 개설의뢰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수익자 발행 보고서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자가 쉽게 부당 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 보증신용장의 이용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함에 따라 은행원을 교육시키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2007년부터 일부 과정에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을 포함시켰고, 2009년부터는 모든 외환업무과정에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승인을 받은 전문자격시험인 CDCS(Certified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에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이 일부 출제되고 있는 점에도 기인하고 있다. 향후 무역협회와 같은 다른 무역전문 교육기관과 대학에서도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김영훈, 스탠드바이 신용장통일규칙(ISP98)과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과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박석재, 국제 신용장 거래에 관한 ISP98, 상사법연구 제19권 2호, 2000.

_____,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법으로서의 UCP 500과 ISP98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2003.

_____, ISP98과 UCP500의 비교연구, 상사법연구 제20권 4호, 2002.

박세운 · 한기문 · 김상만 · 허해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2008.

서백현,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SP98)에 따른 서류검토기준, 무역학회지 제26권 3호, 2001.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7권, 2002.

이상훈, 보증신용장의 활용을 위한 법규적 접근, 무역학회지 제28권, 2003.

Affaki, George, How do the ISP standby rules fit in with other rules? George Affaki reports, Documentary Credit Insight 5-1. 1999.

_____, A User's Handbook to the URDG, 2001.

_____, On revising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Documentary Credit Insight ,13-1. 2007.

Byrne,, James E.,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1998.

_____, ISP98 & UCP500 Compared,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00.

Collyer, Gary, Commentary on UCP 600, ICC, 2007.

Folsom,,Ralph H.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West Group ,2002.

Fung,, King Tak UCP 600 Legal Analysis and Case Studies, P.E.E.R. Consultancy Ltd. 2008.

Goods, Roy,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510, 1992.

Holzwarth, Winfried and Dan Tayler, Were the new ISP Rules on

standbys fairly adopted and will they be useful? Winfried Holzwarth and Dan Tayler, debate, Documentary Credit Insight 4-4, 1998.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The ISP98 Model Forms Project, 2008 Guarantee & Standby Forum, 2008.

Klein, Carter H.,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and Practices Misunderstood or Little Understood by Application and Beneficiaries, 2008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2008.

Maulella, Vincent M., The History of Standby Credit, 1996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1996.

_____, Can US banks issue guarantee?, Documentary Credit Insight 8-2, 2002.

Ransier, Glenn , The US marketplace and the URDG,, Documentary Credit Insight 14-4, 2008.

Stibravy, William , UNCITRAL "endorses" Incoterms 2000 and ISP98, Documentary Credit Insight 6-3, 2000.

Wunnicke, Brooke, Diane B. Wunnicke and Paul S. Turner, Standby and Commercial Letter of Credit, Aspen Law & Business, 2007.

Documentary Credit World, 각호.

www.deprofessional.com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P 98 and the comparison of the ISP 98 and the UCP 600

Park, Sae Woon

The ISP 98 is develop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 1998. The ISP98 are also published as ICC Publication No. 590. A detailed commentary on the rules("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has been written by Professor James E. Byrnes. Presently there is no compelling reason to revise the rules themselves even if ten years is passed since the issuance of ISP98. Instead the Ame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will provide Model Forms in the early 2009.

Special features of the ISP 98 are as the following.

Firstly, the ISP 98 is copyright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Practice, Inc., and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Secondly, the ISP 98 differs from UCP in style and approach because it must receive acceptance not only from bankers and merchants, but also from a broader range of those actively involved in standby law and practice corporate treasurees and credit manager, rating agencies, government agencies and regulators, and indenture trustees as well as their counsel. Because standbys are often intended to be available in the event of disputes or applicant insovency, their texts are subject to a degree of scrutiny not encountered in the commercial letter of credit context. Thirdly, the ISP 98 supplement the UCP if the UCP dose not have the relative rule. Lastly, the ISP 98 has the official commentary.

In addition, several provision of the ISP 98 would surprise the commercial parties and/or are rather peculiar, while some of them display

a certain bias in favor of the banks.

Key Words: ISP98, UCP600